

대전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034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피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합자회사(이하 'B'이라 한다) 사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2. 체결한,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5.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521,3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 신용보증약정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는 B와 사이에, 2015. 9. 9. 및 2016. 6. 21.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대출을 받았다.

2)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구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2016. 8. 2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5.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736,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1) B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2017회합5005호, 이하 ‘회생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3.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구상금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추완신고와 관리인의 시·부인을 거쳐 합계 433,523,876원이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어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7. 10.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3) 위 법원은 2017. 12.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여, 2017. 12. 29. 확정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회생절차는 폐지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채권 양수

1) C, D, E, F, G, H(이하 ‘C 외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회생사건에서 B에 대한 채권을 각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회생채권들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2) I은 C 외 채권자들로부터 위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9. 5. 8.경 I과 사이에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대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의 변제수령

피고는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와 B 사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피고가 변제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 안에서 부인권행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회생절차가 종료되었고, 피고는 확정된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변제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종결 이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성격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② 원고의 전전 양도인인 J 외 채권자들은 모두 회생사건에서 회생채권자로 신고한 사람들인바 적어도 회생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종결일로부터 1년의 단기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다음 각 항목에서 살펴보는 부인권에 관한 법률 규정의 내용과 취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인 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가 가지는 불가쟁력 및 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생계획의 효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익이 없는 채로 회생담보권자표가 확정되고, 이에 기하여 회생담보권자가 확정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의 변제를 수령한 이후, 채권자가 회생절차종결

이후 별도로 회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회생절차종결결정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하고, 조문을 표시할 때는 법률 명칭을 생략한다)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제100조 제1항 제1호 본문)를 부인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부인권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일탈된 공동담보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 취지를 같이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의 행사에 관하여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고, 개별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에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신청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여(제105조 제1, 2항),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개별적 권리행사에 제약을 두고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관리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고(제113조, 제59조 제2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채권자가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회생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인 회생절차의 성격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위한 권리를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고, 채권자취소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상행위, 행사의 요건, 행사방법 등이 완화된 권리인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 보전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168조). 위 규정은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금액이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이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의 이의가 없는 채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가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인으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등 참조).

즉,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이 소멸되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 제약도 해소되는 것이지만, 부인권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집단적 · 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인 회생절차의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가 이미 확정되어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더 이상 이를 행사하여 그 채권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게 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더 이상 확정된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대하여 부인의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다투지 못한다는 법리는, 회생절차종결결정 이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되는데(제283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회생계획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회생절차종결결정이 회생계획이 유효하게 진행됨을 전제로 하는 이상, 회생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신혜영, 판사 박서우, 판사 송현섭

별지1

별 지 목 록

- | | | |
|------------------|---|--|
|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잡종지 500㎡ |
| 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대 591㎡ |
| 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잡종지 973㎡ |
| 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대 372㎡ |
| 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외 1필지 |
|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 | |
| 단층 | | |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하 | | |
| 보일러실 및 대피소 | | |
| 49.5㎡ | | |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 | |
| <hr/> | | |
| 단층 | | |
| 위험물취급소 | | |
| 16.5㎡ | | |
| 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대 122㎡ |
| 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잡종지 863㎡ |
| 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잡종지 988㎡ |
| 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대 866㎡ |
| 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동호 |
| 일반철골조 슬래브지붕 | | |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사무소 167.78㎡

- 1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1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1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주차장 4902㎡
도로 338㎡
합종지 1090㎡

별지2

[별지목록]

소유자 : 합자회사사용본거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번호	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용량기형식	연도
001		뉴슈퍼에어로시티		C8AF	2014
002		BS106		GE12TI	2009
003		BS106		GE12TI	2009
004		래스타		ISF	2014
005		BS106		OL11K	2013
006		래스타		ISF	2014
007		뉴슈퍼에어로시티		C8AC	2007
008		BS106		GE12TI	2009
009		뉴슈퍼에어로시티		C8AF	2015
010		뉴슈퍼에어로시티		C8AE	2013
011		BS106		GL11K	2013
012		BS106		GL11K	2013
013		뉴슈퍼에어로시티		C8AC	2007
014		BS106		GL11K	2013
015		BS106		GE12TI	2009
016		BS106		GL11K	2013
017		BS106		GL11P	2015
018		BS090		GL08P	2015
019		BS106		GL11K	2013
020		BS106		GL11K	2013
021		BS090		GL08P	2015
022		BS106		GL11K	2011
023		BS106		GE12TI	2009
024		BS106		GL11K	2013
025		BS106		GL11K	2013
026		BS106		GL11K	2013
027		BS106		GL11K	2013
028		BS106		GL11K	2013
029		BS106		GE12TI	2009
030		BS106		GE12TI	2009
031		BS106		GE12TI	2009
032		뉴슈퍼에어로시티		C8AE	2013
033		BS106		GL11K	2013
034		BS106		GL11K	2013
035		BS106		GL11K	2013

번호	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등록거점식	연도
036		BS090		GL08P	2015
037		뉴슈퍼에어로시티		C8AC	2007
038		BS106		GL11K	2013
039		뉴슈퍼에어로시티		C6AF	2018
040		BS106		GL11K	2013
041		BS106		GL11K	2012
042		뉴슈퍼에어로시티		C6AE	2013
043		BS106		GL11K	2013
044		뉴슈퍼에어로시티		C6AF	2014
045		BS106		GL11K	2013
046		BS106		GE12Ti	2009
047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		C6AE	2013
048		BS106		GE12Ti	2009
049		BS106		GE12Ti	2009
050		BS106		GL11K	2013
051		BS106		GL11K	2013
052		레스타		ISF3.8E8	2015
053		레스타		ISF3.8E8	2015
054		레스타		ISF3.8E8	2015
055		레스타		ISF3.8E8	2015
056		레스타		ISF3.8E8	2015
057		BS106		GE12Ti	2009
058		BS106		GL11K	2013
059		BS106		GE12Ti	2009
060		BS106		GL11K	2013
061		BS090		GL08P	2015
062		BS106		GE12Ti	2009
063		BS090		GL08P	2015
064		BS106		GE12Ti	2009
065		뉴슈퍼에어로시티		C8AC	2007
066		뉴슈퍼에어로시티		C8AC	2007
067		뉴슈퍼에어로시티		C8AC	2007
068		BS090		GE08Ti	2009
069		BS090		GE08Ti	2009
070		BS106		GL11K	2013
071		BS106		GL11K	2013
072		레스타		ISF	2014
073		BS106		GL11K	2013

번호	등록번호	차량	차대번호	행동기형식	연도
074		BS106		GL11K	2013
075		뉴슈퍼에어로시티		C8AC	2007
076		레스타		ISF	2014
077		BS090		GL08P	2014
078		뉴슈퍼에어로시티		C8AF	2016
079		BS106		GE12Ti	2009
080		BS106		GE12Ti	2009
081		BS110CN		GE12Ti	2009
082		BS090		GL08P	2015
083		뉴슈퍼에어로시티		C8AF	2014
084		BS106		GL11K	2013
085		BS090		GL08P	2015
086		BS090		GL08P	2015
087		BS090		GL08P	2015
088		BS090		GL08P	2015
089		BS106		GE08Ti	2007
090		뉴슈퍼에어로시티		GE12Ti	2008
091		BS106		C8AE	2013
092		BS106		GL11K	2013
093		BS106		GL11K	2013
094		BS110CN		GL11K	2013
095		BS106		GE12Ti	2010
096		뉴슈퍼에어로시티		GE12Ti	2010
097		BS090		C8AC	2010
098		레스타		GE08Ti	2010
099		레스타		ISF	2014
100		레스타		ISF	2014
101		레스타		ISF	2014
102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지상버스		ISF	2014
103		BS090		C8AF	2014
104		BS090		GE08Ti	2008
105		BS090		GE08Ti	2010
106		BS110CN		GE08Ti	2010
107		BS110CN		GL11K	2011
108		BS110CN		GL11K	2011
109		BS110CN		GL11K	2011
110		BS090		GL08K	2011
111		BS090		GL08K	2011
112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지상버스		GL08K	2011
				C8AE	2012

